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과제 담당관	소속(직급)	사법지원실 (법원서기관)	성명 이진서
연구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정연덕)		
연구기간	2022. 12. 29. ~ 2023. 5. 29. (5 개월)		
연구금액	27,544,037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input type="checkbox"/>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input type="checkbox"/> 1회 공고 후 수의계약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수의계약		
연구결과	○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서의 창작비용이성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록무효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 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된 디자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창작비용이성의 적용 모습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판례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를 시행함.		
연구 결과물 제출일	2023. 11. 30.		
평가항목	상	중	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	
내용의 완결성		○	
구성, 체제의 적정성		○	
참고문헌의 충실도			○
학술적, 실무적 가치			○
제출기간 준수			○
용역수행자의 성실성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
평과 결과 총평	○ 각국의 판결을 단순히 번역·나열해 놓은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전반에 걸쳐 주술관계가 어색한 문장이 발견되고 통일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보임. ○ 2차 중간보고회에서 시급한 수정·보완사항으로 지적된 ①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에서 제시한 창작수준의 세 가지 판단요소에 관한 부분이 판결 내용 소개 이외에 구체적인 분석이 되어있지 않고, ②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에서 제시한 창작수준이 낮은 3가지 유형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도 각국의 판결을 단순히 나열해 놓은 수준임. 아울러 특허법원의 대표적 판례로서 2차 중간보고회에서 누락되었다고 언급된 특허법원 2023. 2. 1. 선고 2022허2462 판결, 특허법원 2018. 1. 30. 선고 2018허5402 판결에 대한 부분도 단순 소개에 그침.		

	<p>○ 이와 같이 본 최종보고서는 이번 정책연구용역의 핵심인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이나 요건, 각국의 실무에 대한 비교·분석의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기간(2023. 5. 29.) 후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위 사항이 제대로 수정·보완되지 않았는바, 본 연구용역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의 과업인 용이창작 유형에 대한 정리나 그 법리적 의미에 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p>
공개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비공개 사유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p> <input type="checkbox"/> 1호 <input type="checkbox"/> 2호 <input type="checkbox"/> 3호 <input type="checkbox"/> 4호 <input type="checkbox"/> 5호 <input type="checkbox"/> 6호 <input type="checkbox"/> 7호 <input type="checkbox"/> 8호 <p>(비공개 사유 상세 기재)</p>
<p>2023. 12. 7.</p> <p>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p>	